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173

2018년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김춘례 ·강동길 의원(찬성의원 12명)

나. 제 안 일 : 2018년 10월 17일

다. 회 부 일 : 2018년 10월 29일

라. 상 정 일 : 제28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
2018년 11월 2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춘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,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자원 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"자원봉사캠프"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5호).
- 자원봉사캠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의3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행령 , 타양라인간 단체 자원법 , 「지방재정법 ,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.

나. 입법예고 (2018. 11. 1. ~ 11. 8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가. 개정의 취지 및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(안제2조제5호)하고, 자원봉사캠프 활동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(안제10조의3)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생활권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인 '자원봉사 캠프'는 현재 411개(동주민센터 356개, 사회복지시설 등 55개)가 운영 중에 있으며, 대부분의 자원봉사캠프는 동주민센터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인 봉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 최소한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임에도 지원 근거는 없는 상황임.
 - ※ 자치구 차원에서 월 10만원 또는 분기별 20~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, 캠프 상담가에게 1일 4시간 기준 5천원 ~ 10천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음,
 - ※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캠프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('18년 기준 10개 캠프에 각 100만원)하고 있으나, 시 차원에서의 캠프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.
- 동 개정조례안은 동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구성과 지역 의제 해결의 기본요소인 주민들의 초기참여에 대한 마중물 역할 및 동단위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·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자원봉사캠프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대와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, 민(民)이 앞장서고 관(官)이 지원하여 자원봉사의 기본정신 실현과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"자원봉사캠프"정의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)

- 안 제2조제5호는 "자원봉사캠프"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 자원봉사센터의 인력부족과 지리적·심리적 접근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생활권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를 명문화하려는 것임.
 - ※ "자원봉사 캠프"는 서울시장방침(제397호, 2005.7.27.)에 의해 시작되었으며, 자원봉사자의 수요·공급기관으로서 기존의 복지기관, 대학, 종교시설. 기업 등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.

캠프란?

동주민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기 반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발견 하고 발휘하여 동네의 공익활동에 참여하도 록 지지해주는 개방적 주민참여 플랫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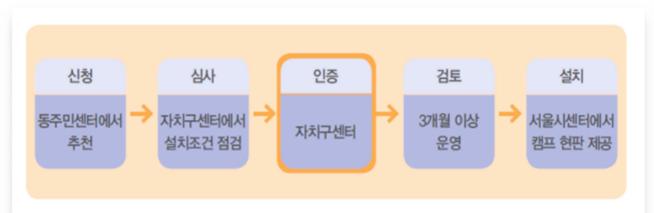
봉사단체와는 어떻게 다른가?

- 이 회원기반의 조직경제가 분명한 직능단체 혹은 비공식적 봉사팀의 형태와는 달리 캠프를 문 영하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모임, 단체, 주민 개인 등에게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형태이며, 동시에 자치구 지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와의 공식적 연계를 통한 구조화된 운영과 사업을 수행한다.
- 동 캠프는 개방적 네트워크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 이므로 삼시적인 연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.
- 자원봉사캠프를 정의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맡아서 기여한 점과 풀뿌리 자원봉사참여를 체계적으로 확산·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.

현 행	개 정 안	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	
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	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5. "자원봉사캠프"란 자원봉사센			
	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			
	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			
	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			
	봉사 거점을 말한다.			

- 정의 규정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자원봉사센터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할 것인지, 자치구 자원 봉사센터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, 관련 법령에서 한두 조문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(법제처 입안심사기준)과 외래어가 정의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바, 이를 순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.

〈자원봉사캠프 신청절차〉



- ① 신청 : 신규 캠프의 경우, 설치조건 확인 후 동주민센터 캠프 담당자가 자치구자원봉사 센터로 승인 신청을 한다.
- ② 심사: 자치구센터에서는 설치조건에 부합하는 캠프인지 점검한다.
- ③ 인증: 점검 후 신청접수 일주일 이내로 승인여부를 처리를 한다. 이에 따른 결과는 해당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통보한다.
- ④ 검토: 승인된 캠프가 3개월 이상 운영(최소 월1회 이상)되는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.
- ⑤ 설치: 3개월 이상 지속 운영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로 캠프현판을 신청한다.

다. 경비지급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의 범위 여부(안 제10조의2)

○ 안 제10조의3은 자원봉사 활동단체인 "자원봉사캠프"에 대해 활동비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현 행		개 정 안
	<신 설>	제10조의3(자원봉사캠프 지원) 시
		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
		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
		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
		서 지원할 수 있다.

- 다만, 상위법령(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2조1))에서 무보수성, 자발성을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- 또한, 현재 「지원봉사활동기본법」에는 지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항(제18조)²)을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단체(종교단체, 기업봉사단체 등)에 대해 활동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- 한편, 동 개정조항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캠프의 활동 및 운영 예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, 예산 확보 방안과 예산의 지원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¹⁾ **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(기본 방향)**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.

^{1.}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^{2. &}lt;u>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(非政派性), 비종파성(非宗派性)</u> 의 워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^{3.} 모든 국민은 나이, 성별, 장애, 지역,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^{4.}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·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^{2) 「}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5. 토론요지 : 없 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173 발의년월일: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: 김춘례, 강동길 의원(2명) 찬 성 자: 안광석, 이현찬, 이동현,

이세열, 이경선, 김경우, 김소영, 김경영, 문병훈,

최영주, 노승재, 최정순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,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"자원봉사캠프"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제5호)

나. 자원봉사캠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10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3조, 제4조, 제14조, 제18조

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제10조
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, 제5조, 제6조

「지방재정법」제17조, 제32조의2

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"자원봉사캠프"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자원봉사캠프 지원)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			
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				
와 같다.	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5."자원봉사캠프"란 자원봉사센			
	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			
	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			
	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			
	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.			
<u><신 설></u>	제10조의3(자원봉사캠프 지원) 시			
	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			
	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			
	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			
	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		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(자원봉사캠프 지원) "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"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
 - 자원봉사캠프 활동비 지원
 - · 상담가 실비
 -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지원
 - ·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
 - · 사무관리비

나. 전제

- 자원봉사캠프 지원의 범위는 활동비(상담가 실비지원) 및 운영비(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)로 가정
-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개 자지구의 411개 자원봉사캠프의 수 및 2,735명의 상담 가 인원은 변동 없을 것으로 가정
- 현재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캠프에 구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'상담가 실비지원' 은 현재 구비로 지원중인 6개 자치구 평균 사업비를 준용하여 비용추계
- '프로그램 운영 시업비'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4개 자치구 평균 사업비를 준용하고, '사무관리비'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18개 자치구 평균 사무관리비를 준용하여 비용추계
- 물가 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

○ 5년(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)

라. 방법

○ 자치구의 자원봉사캠프 지원 자료를 근거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 ≒ 3,950,580천원(5년간)

(단위 : 천원)

	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(2019)	(2020)	(2021)	(2022)	(2023)	답게
세입	_		-	-	-	-	_	_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활동비 (상담가 실비)		196,920	196,920	196,920	196,920	196,920	984,600
	운 영	프로그램 사업비	208,500	208,500	208,500	208,500	208,500	1,042,500
	비	사무관리비	384,696	384,696	384,696	384,696	384,696	1,923,480
	,	소계(b)	790,116	790,116	790,116	790,116	790,116	3,950,580
□총 비용(b-a)		790,116	790,116	790,116	790,116	790,116	3,950,580	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황 훈

분석관(주무관) 김민호

28 02-2180-7953

e-mail: waterkim@seoul.go.kr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(자원봉사캠프 지원) "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"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
-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
 - 자원봉사캠프 활동비 지원
 - · 상담가 실비
 -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지원
 - ·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
 - · 사무관리비

2. 세부추계내역

- 가. 5년간 비용 = 3,950,580천원
 - 연간비용 ≒ 790,116천원
 - ※ '18년 자치구의 자원봉사캠프 지원내역을 준용
- 나.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실비 = 984,600천원
 - \bigcirc 5년간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실비 = $\sum_{i=1}^{5} ($ 연간비용)i
 - i =비용추계 연차(2019년 \sim 2023년)
 - 연간비용 ≒ 196,920천원
 - · 상담가 실비 : 6천원 × 12개월 × 2,735명 = 196,920천원
 - ※ 상담가 1일 4시간 기준 6천원을 2.735명에게 지원
- 다.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= 1,042,500천원
 - \bigcirc 5년간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= $\sum_{i=1}^{5} (\text{연간비용})i$
 - i = 비용추계 연차(2019년~2023년)

- 연간비용 ≒ 208,500천원
 - · 프로그램 운영비 : 8,340천원 × 25개 = 208,500천원
 - ※ 자치구별 연 8,340천원 지원
- 라. 자원봉사캠프 사무관리비 = 1,923,480천원
 - \bigcirc 5년간 자원봉사캠프 사무관리비 = $\sum_{i=1}^{5} ($ 연간비용)i
 - i = 비용추계 연차(2019년 ~ 2023 년)
 - 연간비용 = 384,696천원
 - · 사무관리비 : 78천원 × 12개월 × 411개 = 384,696천원
 - ※ 411개 자원봉사캠프에 월 78천원 지원